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3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

상정된 안건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3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3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3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4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4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4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4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4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4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4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4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4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4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4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4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4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4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4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4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4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4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4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4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4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4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4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4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4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4
3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4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4

(14시03분 개의)

○ 소위원장 고민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고민정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문정복·정을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 김문수 위원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고민정 다음, 박성준 위원님.

○ 박성준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
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
1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
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3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14시04분)

○ 소위원장 고민정 환영합니다.

앞으로 심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4항까지 3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부분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전·서지영·김문수 의원안은 학교에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고 영상정보의 열람 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조정훈 의원안은 현행법상 30조의8 학교의 장의 안전대책 시행사항에 출입문, 복도 등内外 필수 감시지역에 대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보완하고, 방과후 교육 및 돌봄 활동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안은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전·서지영·김문수 의원이 내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안은 개정법률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서지영·김문수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설치 주체는 김민전 의원은 학교의 장 등으로, 서지영 의원안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김문수 의원안은 교실은 제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설치 예외에 대한 사항, 설치비 보조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이어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열람금지와 벌칙 등에 관한 내용들을 3개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논의 필요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현행법을 통해서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의8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설치 시에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 CCTV가 한 37만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교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그리고 42개 학교에서 신중 검토 의견 그리고 자료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에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현행 법령 안에서 CCTV 확대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안을 기본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어서 비교하실 수 있게 조정훈 의원안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개의 개정안은 별도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이 조정훈 의원안은 개정안 내용 하단의 박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의 학교장의 안전대책 시행사항에 이 내용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2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호에서는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있는 교육·돌봄 학생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학교별로 CCTV 설치 사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마련된다면 구체화되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에 대한 보호에서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정 지원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하단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그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내용은 조정훈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의견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4항은 앞서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과 관련해서 4항은 재정 지원 주체를 현행법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2호 부분이 지금 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훈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상세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조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4페이지, 김용태 의원안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이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재난대응센터와 연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기기의 통합관제로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통합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3개 시도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20조의7 내용은 하단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체계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개정안에 따라서 통합관제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학폭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2항과 3항에서 각각 의견수렴 절차랑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 같이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랑 통합관제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현재 13개 시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통합관제를 운영 중인데 그 현황은 전체 학교에 설치된 CCTV 중에서 약 8.3%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교 담장이나 교문, 주차장 등 학교 외부의 CCTV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단체 의견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현재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가 지자체 협조가 좀 어렵고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활동을 대해서 24시간 공개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이 클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산 소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교원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이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교육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령으로 수정의견 제시한 것은 학교마다 학생수라든지 위험요소 등이 좀 다른 상황이고 또 학교 안전 이슈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출입문, 복도, 계단 이외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서 좀 세부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이미 있지만 학생 안전이라는 보다 확대된 목적을 위한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조항과 비용 보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내용 중에 교육감에서 국가·지자체가 통합관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진 위원님.

○**김민진 위원** 오늘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게 우연이지만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대전 학생에 대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교사가 오늘 또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러지요, 유괴라 그러나요.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내부에 있는 CCTV를 다 연결해서 이것을 경

찰이 다 보거나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교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경찰 관계와 연계가 돼야 되는 세상이 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이게 그전에도, 올해 2월 11일 기준으로도 이미 37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필수 지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기준의 법적 제도로는 그런 대응이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조금 과잉입법이 아닌가, 너무 법 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게 뭔가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교육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우려들이 없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감시사회로 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또 하나는 현행법상의 필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복도랑 몇 개를 그런데 그 개념이나 범위가 사실 불투명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돼야만 이 법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책임 추궁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사후의 어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불신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그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현재 현행 법률로도 가능한데 꼭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차관님, 답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행 법률로도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저와 같이 발의를 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서지영·김민전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대전에서 고 하늘이 양이 정말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고 하늘이 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여야 할 것 없이 봇물처럼 많이 논의했고 또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대전에 조문을 가서 당사자분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제안 그리고 내용 중에 제 가슴을 때렸던 게 돌봄 기간 중에 이런 영상을 보고 이 방, 놀이방에 하늘이가 있었는지만 알았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제 가슴을 때려서 여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특히 교사분들이 사생활 침해나 교권 침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또 김민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등하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 특히 교문에서 아이들을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지금의 정책 목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교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많은 학교 폭력이나 또는 극단의 사태들이 일어나는 교문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에 복도…… 저희들도 다 학교 다녀 봐서 알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좀 더 살벌했는데, 이런 데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유괴·납치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학폭·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대가 있지만 학교마다 들쑥날쑥합니다, 통계가.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가 아니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활…… 전국 어디든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다칠 일은 없다는 그런 안심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그것이 전남이든 전북이든 경남이든 서울이든 경기든 표준화된 CCTV 설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하나가 대통령령이냐 교육부장관령이냐 인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이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 이게 대통령령이 되면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위원회, 개보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와도 상의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충돌되는 정책 목표가 조율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하는데……

교육부장관령으로 하면 개보위와 상의는 의무조항은 아니게 되는 거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의견 조회를 해서 의견을 받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령보다는 협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교사분들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대통령령으로 하셔서 개보위, 개인정보위원회에서—그것만 보는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저는 이것 때문에 법안을 막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교육부 관계자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통합관제의 주체를 교육감에서 아예 국가와 지자체,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관리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접근과 필요할 때 쓸 수만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교원단체 등등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의 보안 또는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 등등에 대해서 개인 유출에 대한 우려…… 특히 교사도 녹화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24시간 나를 감독·관리 하는, 교

육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관리할 때 혹시나 내 영상이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법이 통과되고 지금도 CCTV가 있으니까 이 CCTV 영상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도 일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데요. 아주 일부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주로 교문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건물 안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

○**조정훈 위원** 그러면 건물 안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물 안의 CCTV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건물 안은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실시간 관제를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아주 민감한 학폭이나 극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만, 관제센터라 그려셨나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 제도입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 교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것은 통합관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자체에서 통합관제 하지 않고 각 교무실이나 교감선생님이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통합관제 하는 것은 교문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주로 야외의 사각지대를 통합관제 하는 개념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통합관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아닙니다. 지금도 학폭법에 따라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에도 실내의 자료는 절대로 나가지 않고요. 대부분 교문이라든가 운동장 사각지대에서 다른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통합관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법이 통과되도……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똑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지금 학폭법에 따른 통합관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관제를 한다고 하니까 폭력 개념보다는 안전 개념이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화재라든가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을,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관계 대상은 변화가 없지만 살피는 내용이 조금 확대된다 이 얘기입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이것은 뭐 핵심 쟁점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학교시설 CCTV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36만 5875대가 설치돼 있고 실내는 실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미 현행법으로도 CCTV 설치가 상당히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그건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 그건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그건 다 뺏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것만은 아니고요. 교실 내에도 일부, 특수교실이라든지 한 900여 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시설 의무화하면 기본 쟁점이 거기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교실 내까지 CCTV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건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쟁점이 뭡니까, 여기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쟁점이……

○**박성준 위원** 쟁점이 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설 다 있고 학교시설 CCTV 이미 교육법령 안에서 다 돼 있는 가운데에서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쟁점이 없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학교시설 안에서 CCTV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교실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시설 안에서,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누구 전문가가 여기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쪽 분이신가요?

○**소위원장 고민정** 소속이 어떻게 되시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안전과장 최용하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률 안에 따르면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복도, 출입문, 계단 등을 정하고 난 나머지 구역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대통령령이든 가이드라인이든 반드시 필수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곳을 CCTV로 관제를 하려면 지금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실은 대부분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살펴보니까 900여 곳의 교실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반드시 제외하는 법을, 만약에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 교실이라든가 특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설치돼 있는 CCTV를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물어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

에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나 교사나 이런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여기는 좀 설치를 하자 또 위험요소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교실에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900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교실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정훈 위원 박 위원님께 제가 잠깐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하늘이 양 사건이 터지고 나서 CCTV에 대한 요구가 나왔을 때 가장 첨예한 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교실 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쟁을 했고 일단은 법으로 강제하는 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잠정적 결론이 내려서 어떤 의원의 법안에도 교실…… 오히려 교실을 빼자라는 법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실을 포함시키는 법안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복도나 계단이나 그다음에 현관 등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지금 이 법안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관제센터가 어떻게 보면 붙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지금 안전과……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안전과장입니다.

○백승아 위원 말씀 들으면 더 확신이 드는데, 지금도 이미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안전에 대해 우리가 더 강화해야겠다 그러면 교육청 교육감의 지시로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교사, 학생 또 학부모 의견 모아서 CCTV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학교마다 구조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 어디어디가 사각지대니 어디에 합시다’ 이렇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을 보면 학교 교실도 얼마든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의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 ‘등’이 들어가거든요. 이 ‘등’ 자에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저는 이걸 법으로 만약에 굳이 해야겠다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으로 꼭 해야겠다면 저는 교실은 제외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교실을 제외한다는 게 또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서 이미 900여 곳에서 교실에 설치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교원의 또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설치를 교실 내에도 했어요. 그런데 법이 만약에 교실은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꼭 필요한 데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과잉 입법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현 상태로 두는 게 교실 안에도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CCTV 설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늘이 법으로 인해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교문, 사각지대 이런 데에 논의를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더욱 지시를 내려서, 쟁여서 설치를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야 한다면 저는……

그리고 감시라는 표현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필수 영상정보 처리지역 이런 식

으로 하든지, 감시라는 말을 빼면 좋겠고 교실을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만약에 만든다면.

그리고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지금 실효성이 매우 낮아요.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가 지자체 협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시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현재 서울 기준 초등학교 1만 5143대 중에서 197대만 연계가 돼 있대요. 1.3%인데요. 관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내 교육활동을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에 24시간 내내 공개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큰 것에 비해서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차관님, 교실 내에,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한데…… 뭐 연구 결과가 있나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연구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의무화가 되면 CCTV를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용, 관리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교부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고로 할 건지 그것도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왜냐면 교부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나라 재정이 안 좋아서 또 불용 처리될 확률이 큰데, 또 줄어들 확률이 큰데 이것도 다 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통합관제센터가 학폭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안전 대책으로 영역이 넓어졌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단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교부금으로 할 건지 재원 문제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자체장에게,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가 1만 2000개거든요. 2026년에 CCTV 설치비용으로 학교당 3대 정도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600억 원 정도 기재부에다가 국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은 되지 않았고, 다만 2025년도에 어쨌든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돌봄교실 주변으로 해서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 찾아서 초등학교만이라도 CCTV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당 3대 정도 해서 1만 7000여 대 추가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사건 이후에 추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저는 좀 과잉입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쟁점이 그렇게 되냐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충분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출입문, 복도, 계단,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율적으로 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걸 굳이 의무조항으로 꼭 둘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단계는 학교 교실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저는 그래서 충분한, 지금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서 더 강제조항을 두고 규정을 두고 갈 경우에는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에, 운영위의 폭을 너무나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서지영 위원** 저도 법안을 냈는데, 김문수 의원님도 내셨고 여야가 다 법안을 냈는데요 이 법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공분했었고 그 이후로 소위 하늘이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이 법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불안을 겪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 교사들의 반대 의견 또는 어떤 교사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활발하게, 저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법안들이 나와 상회되는데요. 하늘이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이 당시에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늘이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막지 못했던 여러 단계들이 있었지요. 첫 번째, 문제 교사에 대해서 예방 조치 차원이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잠자고 있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 예방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하늘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위급한 골든타임이었을 수 있는데 하늘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었지요. 하늘이 스스로가 위치추적기가 제대로 부여됐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제도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거였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하늘이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마 놀봄교실인가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것만 파악됐지 시청각실로 이동한 것을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또 아이가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법안들입니다. 저는 미리 대응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답변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 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CCTV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국민적 여론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법안으로, 좀 더 나아간 법안의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도 비슷한 논쟁이 오래 있었거든요. CCTV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느냐면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악용되면 인권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선한 곳에만 사용하면 범인도 금방 잡을 수가 있고 또 피해자도 신체가 손상됐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문만 확인해 갖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정보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것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면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쁜 곳에 사용하는 순간 아주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맥락이라고 보고.

CCTV도 의사들 수술하는 데 할 거냐 말 거냐, 어린이집에 할 거냐 말 거냐, 학교에 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좋은 쪽에만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그렇느냐하면 예방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범인이라든가 범죄의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CCTV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양쪽의 진술마저도 혼란이 있고 기억도 혼란스러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리를 잘하고 정보를 좋은 곳에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교실에서 상시적으로 이것을 수업하는 데까지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실 정도는 제외하되 나머지 정도는…… 그런데 의무화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율이라는 건 당연히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특히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린 학생들은 하자라고 주장할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어른도 아니고……

지금 마을마다 CCTV가 예전에는 인권침해 때문에 하지 말라는 쪽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골목 다니는데 인권침해까지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온 동네, 돈만 있으면 CCTV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나쁜 짓 할 것도 아니고 도둑 잡는 데 강도 잡는 데 또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없어지고 길 잃은 데 이것처럼 좋은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가 교권이 너무 침해되지 않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교실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도는 그것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되 의무화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 가지고 법제화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한 바퀴 돌아서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고 강경숙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교실을 제외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시 논의를 해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할 것인가를 저는 묻고 싶은데요. 한 학교에 3개만 설치하는 데도 600억 예산을 잡으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한 학교당 몇 개 정도의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추계를 잡고 계십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해서 초중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화되는 거잖아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1대 설치하는 데 100만 원 해서 1만 2000개, 초 중고 다 해서 6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만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비용이……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이 법안은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초중고 5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 추계를……

○**소위원장 고민정** 초중고를 다 합쳐서 5개씩 하면 600억이 나온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학교당 5개씩 설치하면 됩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일단은 그때 사고가 났던 부분이……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출입문, 복도, 계단이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당 몇 개의 CCTV를 설치할 건지 개수가 나와야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 추계하셨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그런데 학교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는 5대 정도면……

○**소위원장 고민정** 가능하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사각지대 정도는 일단 급한 대로 다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소위원장 고민정** 보통 4층까지는 통상적으로 있는데 1개 층에 하나씩만 해도 4개에다가 출입문까지 하면 5개인데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지금 현재도 필수감시지역이라고 해서 건물 내외 주 출입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한 5개 정도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1대라는 게 기기 1대가 아니고 시스템이 1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고민정** 하나의 시스템이?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5개의 시스템이 한 학교에 다 들어간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신 걸로 교육부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6년 소요 예산으로 기재부에 600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 초등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어쨌든 늘봄교실 주위에 당장 사고도 났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학교당 3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서 1만 7000대 정도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요, 제가 이 법을 반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당장 학교에 CCTV가 꽉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의무사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결특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에 빨리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 추계를 잡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26년 됐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아래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법을 통과시킨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다 준비가 안 돼 계시는구먼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아니요, 그때 산출한 건 600억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기재부하고는 논의가 다 됐고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논의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은 국가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소위원장 고민정** 없고? 그러면 뭘로 할까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초중고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국고로 지원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부금 부담으로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교육청하고 논의는 되셨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제가 계속 질답이 왔다갔다 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제센터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CCTV를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들어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뭐라고 받으셨는지 그 두 가지를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제센터라는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테지만 우리가 나중에 범죄자를 찾고자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사건이 발생되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지금 당장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교감선생님이 보시기도 하고 행정실에서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법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고로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고 교육청에다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국고로 반영이 안 됐으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 교육부에서 나눠 준 보통교부금으로 일단 해결을 하라고 요청했고요.

두 번째, 지자체 관련해서는 지금도 유관기관이 납치, 유인 이런 것 관련해서 지자체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마다 통합 관제하는 부분이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교문 이런 데 통합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관제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지침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그 관리 감독을 행정실장에게 할 것인지, 교감에게 할 것인지 그건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교장이 누군가에게 지침을 내리면 그 사람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지고 하는 거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하고 조정훈 위원님 할게요.

○**강경숙 위원** 사실 저도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누구나 다 중요하지 않다고,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CCTV 설치 유무라기보다는 교사의 자율,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적, 학교 자체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교육청이나 교원단체들이 지금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협의하에 심의 회의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론 사전에 선제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후에 사후 분쟁 때도 이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쇄도할 때 행정력 같은 것들도 감당해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이걸 의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하늘 양의 그것을 일부 과편으로라도 기억한다면 이 법은 오늘 저희가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적으로 맡겨 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또 자율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야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 이 부분만큼은 이제 모든 학교에 설치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라는 겁니다.

서울시 자료인데 얼마 전에 난 기사에서 보면 자치구별로 CCTV 숫자가 학교별로 너무 달라요. 강남구하고 구로구는 학교별로 10대가 있는데 중구는 1대밖에 없어요. 10 대 1입니다. 제가 있는 마포는 4대예요. 이게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지역마다…… 서울에서도 자치구마다 10대가 설치된 구가 있고 1대가 설치된 중구가 있는 걸 봐서는 이만큼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격차가 자율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최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아이가 어느 자치구에 다니든지 보호받아야 될 안전의 기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이 600억 또는 초등학교 일부 돼 있는데 저는 예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닌 것은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통과하고 또 고민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예결위 위원이니까 어떻게든지 기재부하고 노력을 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 보충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는데 그리고 자율에 맡겨서 지금 이렇게 들 쑥날쑥 10 대 1의 CCTV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걸 또 자율로 남겨야 된다? 그러면 자율로 남기면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이 격차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사이에 누구 1명 또 세상 떠나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 대해서, 특히 민감해 하는 교실을 제외하는,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실 외에 나머지를 제외하는 문구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된 거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지금 이 법을 넘기지 않고서 그냥 자율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10 대 1의 격차가 줄어들기를 어떤 사람이 지금 확신하고 ‘내가 보장할게’ 할 수 있습니까?

○**강경숙 위원** 저 10초만 쓰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이걸 좀 마치고요.

그다음에 백번 양보해서 통합관제센터는 조금 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걸로 치고, 그러면 이번에 그냥 넘기지 말고 CCTV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령으로 해야 그래야 지금 기재부도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또는 11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된다, 상임위 통과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것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 600억, 몇백억이 됐든 이것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돈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하늘이 법인데’ 이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감시지역이 쉽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전 취약지역이라고 하지요. 학교 내 안전 취약지역이 모든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향이 맞지 ‘이것 안 됐으니까 이 법 쉬자’, ‘저것 안 됐으니까 또 넘기자’ 그러면 그사이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진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공을 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교육위의 하나의 대체 법안으로 될 거니까 이건 오늘 넘겼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때도 제일 먼저 넣자고 부탁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음이 내켜서 임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교진 장관이니까 장관님이라 불러 드릴게요. 최교진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 물었습니다. 서면질의 32번입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지역의 CCTV 설치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오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CCTV 관련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는데 마치 아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AIDT도 그렇고 또 고교학점제 문제도 그렇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일단 국회에서 법안은 다 통과시켜 놓고 뒤처리는 안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통

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 시행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은 절대 안 된다. CCTV 아무 데도 설치 못 한다’ 이런 것도 아니시고 교실 부분만 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조문에 충실히 담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이유는 당장에 내일 실행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더라도. 현장에 이 법이 딱 내려갔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법안 통과를 우리가 해 보자는 의견인 것이지 ‘CCTV를 반대합니다’ 하는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은 위원님의 법안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게 바로 가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모두가 다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걸 점검하자는 것이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의 진정성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범죄들이 모든 CCTV를 의무화하면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오늘 그냥 무리하게 다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예산 부분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교실을 제외하고 학교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 생활하고 계시는 교사와 학생, 학생을 대표한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 청취도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실에 대한 우려점이 제일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등’ 자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다 교실은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들의 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하는 것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결특위도 가동되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난번에 600억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안 받아 줬어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저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시면서 이것 CCTV 하게 되면…… 법 통과되면 무조건 기재부랑 교부금 5 대 5로 하든지 7 대 3으로 하든지 이렇게라도 법에 실어 놔야 안정적으로 CCTV가 설치되지 그냥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봅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도 나중에 책임 안 집니다. 교육청은 교부금 없다고 그래서 안 줄 거고 국가는 우리한테 꼭 내야 할 의무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안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들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 통일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 상황이 준비가 됐는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정훈 위원님 어때세요?

○**조정훈 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예산을 다 마련해 놓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법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그것이 강제 조항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지요, 늘 추계를 뽑고 했지요.

○조정훈 위원 우리가 중요 법안들 할 때 예산추계 생략한 게 한두 개입니까? 예산추계라는 걸 제가 교육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왜 이 법안만큼은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발언하니까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법이 오늘 통과된다고 바로 실행됩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록을 위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이 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고 대통령령이든 교육부장관령이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나와야 그래야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게 수십 수백 개였는데 대통령령과 교육부장관령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통과시킨 적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순서는 명백한 겁니다. 법안에서 취지를 정하고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거지 그 뒷단이 다 준비되어야 이 법이 통과된다? 왜 이 법에만 그걸 적용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법안에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통합관제시설 이것은 제가 양보해서 추후 논의하자고까지 했는데, 저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법이 아니고 김문수 의원님도 내셨고 네 의원님께서 함께 내신 법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그 난리가 났을 때 김영호 위원장님 앉아 계실 때 우리의 문제를 2개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 또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자. 저는 이것 범죄자를 잡아낸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내려간다는 걸 누가 지금 부인합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뭐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육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고 김문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어떤 법안으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까지 다 확인해 오셔 가지고 이게 교육부장관령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인지까지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걸 넘기면 다음 번 모임에서는, 다음번 법안소위에서는 또 뭘 논의합니까? 논의할 내용이 다시 처음부터 도는 것 아닙니까?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 하나 오엑스로 갑니다’로 결정을 하든지 또다시 똑같은, 실은 이것은 관한 법안소위가 몇 달 전에 있었던 것 보면 이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서지영 위원 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서지영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하늘 양 아버지의 워딩이 KBS 뉴스에 나간 내용입니다. ‘위치추적 어플에는 계속 학교라고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 위치추적 어플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 반복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찾아다녔는데 하늘이를 못 찾았어요’. 이 아이의 이동경로만 복도를 통한 CCTV가 있었으면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어디 예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그 아이가 참혹하게 죽어 갔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법제화하면 안 됩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자꾸 말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을 반대한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여쭐게요.

이 법이 본회의에서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계산하고 계세요?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국감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지영 위원님이나 조정훈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 사각지대에 CCTV 다 설치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 일정상 추석이 꺼 있고 그다음에 국감이 바로 다 붙어 있어서 법안소위도 열 수가 없고 전체회의도 열 수가 없고 본회의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끝나자마자가 되면 아마 1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든 오늘 통과시키지 못하든 어차피 본회의는 1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교실 부분만 빼는 것에 대해 일단은 여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말씀 주셨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한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것을 정치하게 잘 준비해서 하자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해도 자꾸 다르게 해석들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고요.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우려점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법안이 있는데 뭇하러 이것까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실 부분은 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동의하니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랑 현장에서의 인력 문제 이런 것들만 점검해서 합시다’ 하고 말씀드린 건데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면 오히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실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 일정 등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그 말씀도 실은 이게…… 아니, 김문수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자꾸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더 정교하게 정치하게 하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법은 통과하되 필요한 게 결국은 교실을 제외하되 지금 필요한 걸로 인정되는 구백몇 개의 교실까지 오히려 부작용이 안 가게 하는 문구 하나만 교육부하고 위원들하고 합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속기록에 남겨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또 새로운 의원이 새로운 관점 나오면 또 토론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다음번 회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저는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도는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것을 순연한 이유가 지금 나온 이슈들을 더 정치하게 정리해서 가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그때 또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전임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 하나만, 나머지는 더 이상 토론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똑같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몇 달 늦춘 법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슈를 줄이자, 예산은 솔직히 죽었다 깨도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해 오지 못할 겁니다. 기재부는 법이 통과되는 전제로 예산을 나눠 준 적이 없어요. 법이 통과되면 예산 나눠 주지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항목을 미리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교육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논의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백번 양보해서 교실과 관제센터를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수렴해서 합의할 수 있는 문구를 갖고 오면 그때는 그냥 의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저한테 전권을 다 주시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이 전제하에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건 아니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 전제하에 전권 드릴 수 있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여당 위원님들 혹은 야당 위원님들……

○조정훈 위원 이게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진도를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

○백승아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그리고 박성준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의견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저는 같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세 번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체적으로 이 법이 너무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학부모 단체에 뵙고 수정을 세 번 해서 세 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끝까지 다시 추진을 하면 되지 어디까지는 약속을 하고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이것만 하고 그것은 조금, 그러면 다른 법안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면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는 고쳐 왔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임할 거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는 학교 안에서 이런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 자녀의 엄마고 아이들 직접 가르쳤던 선생님이고 하늘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그날 대전에 갔었습니다. 너무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추가로 CCTV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할 수 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무화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법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법이라는 게. 여기서 의무화가 되면 다른 것들도 다 파생적으로 법의 형평을 맞추려다 보면 영향을 받을 텐데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지 학생 안전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맴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른 법안들도 지금 꽤나 많이 뒤에 대기하고 있어서 괜찮으시면 일단 다른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고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정훈 위원 예, 보류하시지요, 일단.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의사일정 6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는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조문 번호만 다를 뿐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개정안 첫 번째 내용은 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첫 번째 사항은 소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립대학병원 등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병원의 정관 변경 시에 승인 주체, 이사·감사·대학병원장의 임명 주체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제출 상대 기관 및 업무의 지도·감독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등이 안 제4조, 10조, 14조, 21조, 22조 등입니다.

다음은 목적 조항을 추가한 사항인데요, 김민전 의원안에서는 소관 변경에 따른 자율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 조항에 대학병원의 자율성 고려를 명시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 사항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했고, 김윤 의원안은 목적 조항에 의료 격차 해소를 명시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지원 사항인데 안 제19조에서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해 운영비 등을 현재는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출연금·보조금 규정 외에 사업과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개정 사항은 김윤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윤 의원안 첫 번째 사항은 대학병원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대학병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대학병원 이사 수가 현재 11명인데 2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이사 구성 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는 임상교수요원에 대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파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개정안 내용인데 김민전·장종 태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항 외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 등이 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페이지 내용은 개정 조문 현황 내용이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 내용 소관 변경 사항부터 검토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이 지금 전공의 수련 등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왔지만 지역의료 거점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현행법을 보시면 복지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립 대학병원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도 병원의 사업 범위에 공공 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 바 있어서 이 근거에 따라서 현재는 대학병원들이 공공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성과 저하를 우려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인데 이관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원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참고자료로 복지부 이관 논의의 배경이나 현재 국립대병원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7페이지 내용은 이관 논의의 배경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업무와 더 상관성이 높다는 내용이고요 민간 병원 대비해서 국립대병원들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부에서 가용할 재원이 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지금 국립대병원의 현황 내용인데요 국립대병원은 지금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총 14개이고 7개의 분원이 있습니다. 총 병상 규모는 지금 박스에서 보시는 것

처럼 약 1만 5000개가 있고 정원은 의사직 1만 명을 포함해서 약 5만 2000명 정도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용은 재정 현황 관련된 사항인데요 10페이지의 합계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을 합계 기준으로 보시면 의료이익 기준으로 해서 22년 기준으로는 약 3926억 원의 적자, 23년 기준으로는 약 4459억 원이 의료 부문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합계 기준입니다.

다음은 이관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변경되는 내용은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 부분에 변경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겸직교원의 임상교수의 소속,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직원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개정 후에도 변경이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관 변경 후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부처에서 정리해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총 인건비 정원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병원들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총 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설명을 상세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하 개정 사항 2번부터는 이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번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이관이 바로 됐을 때 교육연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진료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관했을 때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별로 조금 의견을 제시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이따가 논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이것을 숙성을 좀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느냐하면 정부 부처 소관을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변경됐을 경우에 효과 면이라든가 또 그것이 지역의 의료체계라든가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것들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청회 했나요? 공청회 했습니까?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입니다.

공청회를 한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공약과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청회는 한 바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조금 더 국정과제를 떠나서 여론의 수렴 과정, 공론화, 숙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조금 더 교육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률 검토도 그렇고 이거 숙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이게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국립대병원이 처한 문제나 이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관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국립대병원에서 교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한 이유를 들어 보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 역량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관시키는 그 절차만 집중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반대하는 현장 의사들에게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관해 와도 교육·연구 역량을 키워 줄 수 있게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또 단순히 필수의료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종합병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필수의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 주고 오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현장에서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오라고 하면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가 터지면서 전공의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도 채 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부담은 다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교수들에게 복지부로 억지로 가라고 밀었을 때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버텨 온 마지막 끈까지 끊어서 병원을 혹시나 이탈하면 어떡하지?’ 저는 약간 이런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좀 더 숙성시켜서 복지부에서 너네가 우리 쪽으로 오면 어떠어떠한 것들 우리가 교육·연구 역량 보존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지금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을 억지로 막 밀어붙이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제시하던 예산까지도 받아 오지 못하는 그 모든 주체들이 다 멘붕 상태인데 잘못하면 출속이라는 말이 붙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복지부, 교육부 두 분 다 재정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답변을 양쪽 다 부탁드릴까요?

앞으로 오셔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논의해 왔던 내용이고요. 사실 공청회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김민전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시고 여러 국립대병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국립대병원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부원장, 기조실장, 국립대병원장 이렇게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12번 이상 회의를 진행해서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은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대병원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병원의 발

전계획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을 하고 그것들이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겸직교수, 전임교원 수를 지난 번에 3년간 1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이런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고 올해 300명 이상의 교원을 이미 확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기능 부실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을 제기할 하고 계신데 실제 이관이 됨다고 하더라도 김민전 의원님안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목적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을 삽입을 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다른 관리 체계나 거버넌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 위축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에만 적용되는 R&D 과제를 3년간 500억 원 정도의 과제를 새로 신설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증액을 해 나가면서 교육·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교육부보다는 교육 분야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임상교육 과정이랄지 전공의 수련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튼튼히 함으로써 졸업생들이 전체 의사 양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교육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아직도 그렇게 교수협의회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병원 내에서도 갈등의 여지가 크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하나만 짚어 볼까요?

전임교원 1000명 확대 발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전에 정부에서 계획 세워 놨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산이요? 어떻게 도대체가 뭘 그전 정부하고 했던 거……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열린 거면 거기에 맞게 비전뿐만 아니라, 물론 목적은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자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필요성 보고’에 보면 검토 방향이나 추진 여부에 전임교원 1000명 확대 발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 정부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학생들을 중원을 했지 그다음부터는 중원계획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하던 것에 제대로 맞추지도 않으면서 뭘 제대로 준비했다 그려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국장님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예.

○**강경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립대병원장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간담회 말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어떤 방향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저희가 국립대병원장님들하고 전체……

○**강경숙 위원** 직접 만난 적이 있으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예, 여러 번 만났고요.

○**강경숙 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이번에 9월 17일에도 직접 대면으로 했고요. 그 전날에는 줌(Zoom)으로 8개 병원장님들 참석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7월 달에 김윤 의원님이 참석하신 국립대병원장협의체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뭐가 그렇다고 하던가요?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잘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반대인 거예요? 단지 연구와 교육만의 문제였을까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병원장님들께서는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진료 역량 강화나 지역의료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십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복지부에 대해서 일부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이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기회들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

○**강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정상화될 등 말 등 하는 중인데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제대로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뜻은 아닌데 이런 절차라든지 구성원들의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노력이 필요해요.

차관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있으세요, 국립대학교병원장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법안소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하면 10개 국립대학에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결과 9개 국립대 중에서 6개 병원이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그 조건부가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3개 국립대학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의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좀 제대로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충분한 검토기간, 내부 구성원 합의, 교육과 연구의 정체성 확립, 의료인력 이탈과 수급 문제 해결 이런 것 등이었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 제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근히 잘 준비돼야만 현 정부가 새로 열리면서 이렇게 야심차게 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국립대병원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국장님도 여러 차례 만나셨다고 말씀도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있었던 기관들이 복지부로 갔을 때 기존에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방 의료인력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재정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설정’ 그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좋아 최우선 순위지 그게 얼마 혹은 몇 %인 것인지가 다들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R&D 투자 분야에서도 3년간 500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에 했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3년 이후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궁금증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대병원협의회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김민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고 모든 정부가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늘상 논의됐던 거라 그분들이 무작정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준비가 성실하게 잘돼 있고 그 약속을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이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복지부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국회를 활용해서라도 그 신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저희가 아까 CCTV 법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본회의에 통과시키기가 국회의 일정상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국립대병원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한때 그냥 어떤 에피소드처럼 끝나 버리기는 했지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내부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국립대병원장들께서 굉장히 난처했었던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어쨌든 거버넌스는 뭐가 됐든 체계는 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가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 원래 이랬어’ 하고 다시 칼을 꺼낼까 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부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것인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로 이관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게 23년 말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거쳐 가면서, 24년에는 사실 복지부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으로 가는 예산이 대략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2025년과 26년에는 교육부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한 100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2000억 이상의 재정을 편성을 했고. 사실 저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만 저희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의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협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9월 중에 국립대병원에서 이전에 협의체를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국립대병원이 요청했던 사안들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관과 맞물려 가지고 새롭게 논의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9월 중에 다시 협의체를 재개해서 10월, 11월에 밀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저희가 내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국립대병원장님들께도 구두로는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직적인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7일 날 병원장님들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국정과제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해서 다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은 지역 중심의,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하는 그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 어떤 권역과 지역의 아주 수직적인 체계를 갖는다기보다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이지 어디에 있든 기관의 거버넌스가 어떤 특정 기관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었는데 급히 추진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있었고요.

최근에 여당 위원님들 방에도 아마 찾아가셨으리라 짐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준비가 됐다고 확신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의료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조정훈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겠고 지금 이전을 해서, 최근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과반 이상이 국립대병원……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아까 입장 밝히실 때 서울대는 반대한다는데 국립의료원은 입장을 안 적으셨던데 공식적인 입장이 뭐였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 외의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사항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왜냐하면 제도적 정합성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침예하게 얹혀 있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고요?

○**김민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국립대병원이라고 하는 게 연구와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또 지역의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료가,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들이 지역의료의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병원장님들을 만났을 때도 병원장님들의 입장과 또 구성원들의 입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제법안에서도 자율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나 병원장님들 입장

은 아무래도 병원이 지속가능하냐 또 지역에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병원장님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병원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 적어서 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국립대병원도 지역과 또 서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치과 병원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본인들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일반 국립대병원과 좀 분리해서 법안을 내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제가 법안을 발의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연구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3페이지를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이 1차, 2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차, 2차 설문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재처럼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94.7%입니다. 그리고 2차 의견도 서울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냈을 때 ‘현재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97.2%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정도의 법안, 그러니까 관할 주체가 바뀌는 부분에서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이 정도의 비율로 일방적인 의견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걸 자세히 법안을 발의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보다 더 잘 아는 분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이…… 6 대 4 라든지 이 정도 비율이라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절대적인 분들이 지금 반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또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방금 부산대학교병원장에게 통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직접 듣고 싶어 가지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님들이나 부산대학교병원 교수님들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자체로 보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추진이 좀 신중하고 좀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6쪽에 서울대학교병원은 신중검토인데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견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리고 기사로 보면 다른 곳도 반대의견이 많은데 의견조회를 받아 보신 건가요, 다른 대학병원에도?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저희가 의견조회를 부처를 통해서 전달받는데 부처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는 하지 않고 회의 등에서 의견제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보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리할 때 현장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개별 병원, 9개 지역병원별로 교수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완결된 건 아니고 회의 직전에 제가 받은 바로는 2520명이 대상인데 그중에 1267명이 응답을 했고 그중에 927명이 반대해서 응답자의 73%가 이관에 대해서 현재 교수님들이 반대한 상황입니다.

○**정성국 위원** 간사님, 잠깐 추가로……

○**박성준 위원** 노조는 찬성하고 교수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예?

○**박성준 위원** 노조는 찬성하고 교수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그렇지 않고요. 교수님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국립 대병원 14개 병원 중에 6개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의료연대가 여섯 군데인데 거기 여섯 군데 노조는 이관에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의료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느낀 게 12쪽에 인프라 보면 복지부에서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최우선순위로 설정’ 이런 추상적인 안으로는 교수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구체적인 안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구체적인 안으로, 복지부에서 국립대학병원에 어떻게 재정투자를 하고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R&D 투자 500억 원 신설 증액하겠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인프라, 인건비, 부처 내 전담조직 등등 제 눈에는 다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냥 일단 오면 해결해 보자 이렇게 보이면 불안해요, 병원에서는. 또 병원장님들과 만난 거지 교수들이랑 만난 건 아니잖아요. 일선에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황에 맞게, 재정투자 예산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복지부에서 그동안,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걸 제시해서 신뢰를 쌓았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지금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부산대병원도 제가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 반대가 확연하답니다, 확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 73%라고 했지요?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예.

○**정성국 위원** 열두 분 중에 거의 9명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예.

○**정성국 위원** 열두 분 중에 9명 정도면 여론이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은 우리 위원들이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까 정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병원은 97%가 반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는 교육부에 존치시키고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에 대해서만 일단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게 맞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반대하면 그러면 안 보내는 거야?

○**소위원장 고민정**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설명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일단 저희는 그동안 서울대가 국립대병원 협의체 의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립대병원을 리드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지방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의 국립대병원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기능과 지금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현시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흔쾌히 이관에 동의를 하고 다른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더 말할 수 없이 기쁘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대 내의 구성원들이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먼저 이관하면서 여러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서울대병원과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마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체로 모든 정부가 다 추진을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논의를 추진해 왔겠지요.

그러나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것에 얼마큼 동의하면서 흔쾌히 같이 따라와 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아까 김민진 위원님의 말속에 맥락이 들어가 있는데 병원장과 교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장들은 동의하셔도 73%의 반대, 98%의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교수들은 다를 수 있다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것을…… 오늘 참 범안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날인데 통과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73% 말씀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게, 그분들에게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 주시면 여야가 다 노력해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설득하고 소통하시고 그 과정을 좀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30분만 쉬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빨리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조정훈 위원** 아까 CCTV도 좀 논의하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10분만요.

○박성준 위원 10분만 쉬시지요. 4시에 하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10분만 쉬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서 비슷한 내용인데 교육공무원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두 개를 연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5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공통되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이나 또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 배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한 파트입니다.

2페이지까지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3페이지부터 개별적으로 안에서 차이 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직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백승아·강경숙 의원안은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김문수 의원안은 의무적 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사유와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안은 교육감선거 입후보, 백승아 의원안은 교육감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 강경숙·고민정 의원안은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전 5개월부터 2개월까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10일까지로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백승아 의원안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 가능 대상을 교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고민정·김문수 의원안은 휴직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해서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의 본질적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고 반대로 현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의 직무전념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합헌적인 제한이라는 의견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또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과도 조문이 관련되어 있어

서 관련 안건들이 지금 행안위에도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하고 진도를 맞춰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과 관련해서—9페이지입니다—지금은 각각의 안들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 경과에 따라서는 이 시행일이라든가, 특히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휴직 신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논의 진도 사항에 따라서 부칙 부분은 결정되는 시점에서 시행은 바로 하더라도 적용례라든가 특례를 두든가 이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두 번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지금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공무원법에 원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백승아·고민정 의원안은 그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교육감선거 입후보로 휴직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공무원으로 조금씩 그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경숙 의원님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57조 및 82조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 내용의 부칙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사립학교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하 뒤에는 조문대비표로 정리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참고자료에는 정치적 자유 제한에 대한 현행 법령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현재의 결정례 그리고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행안위에 계류된 개정안들의 현황들을 참고자료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적용된 내용을 그대로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하고 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특히 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휴직 허가나 휴직 사유, 휴직 기간에 대해서 각각 교육공무원법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사립학교법에서도 그대로 의원안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칙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립학교법에서도 의결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한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교원의 정치운동 허용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공무원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1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허용을 한다면 지금 현행법에,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면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이 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부칙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후보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교육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또 한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 겸직과 관련해서 백승아 의원안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고민정·김문수 의원안은 교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입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교원으로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하 논의 쟁점 부분이라든가 부칙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 조항별로 보면 굉장히 큰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도 국가공무원법 관련해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뭘 한다고 그러셨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전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어떤 식으로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치적……

○**조정훈 위원** 교원만? 아니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공무원의.

○**조정훈 위원** 국가공무원 전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전문위원 윤상열** 그 부분은 소위자료에서 설명을 빠트렸는데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고민정**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조정훈 위원** 무슨 법?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공무원법?

○**박성준 위원**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전문위원 윤상열 지금 페이지를 저도 찾을 수 없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지만 그 표현 중에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부분은 너무 표현이 불명확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헌이라는 내용이……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공무원법 18페이지?

○전문위원 윤상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18~19페이지.

○전문위원 윤상열 그래서 그에 관한 개정안이 현재 행안위 쪽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윤상열 교육공무원법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왜냐하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그런 취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안에는 대상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제안이 돼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도 여러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가 이 부분에서 삭제가 된다면 정치단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로 정치적 표현이 허용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논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게 위헌이라서 가입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 밖의’라 정당은 아닐 거고 그 밖의 정치단체일 겁니다.

○김준혁 위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겠지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정당 가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말을 시작했고 들어와서 처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 하나씩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3개가 굉장히……

○김준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같이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런가요?

○김준혁 위원 하나하나 논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논의하고.

지금 차관님 말씀은 어쨌든 이 법안이 의미는 있으나 인사혁신처에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크게 보자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도 저희가 살펴보고 조항별로도 저희가 조금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그쪽 법안에 저희가 무조건 기속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논의를 하되 그쪽 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당연히 참고해 가면서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일단 먼저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또 선거운동 등을 위한 휴직 근거 마련,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이랑 사립학교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니까 우리나라가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까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 제도와 문화 인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출신 의원들이 의회에, 독일 같은 경우는 10%, 20%까지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흔해요. 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2대 들어서 현직 교사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정성국 위원님이랑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인데 교육부 신중 검토 의견에는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수학권과 참정권이, 기본권이 충돌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법을 마련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교육부가 의견을 주셨는데 국립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휴직 출마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점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하는 대상이 다르고 교수들은 교육만이 아니라 연구도 겸하고 있는, 하는 업무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또 미성숙한 중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서 안 된다는 의미 같은데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고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지 않게 하는 조항을 제가 법안에 넣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면, 그러한 환경이라면 대학생이든 더 미성숙한 미성년자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업무도, 교사도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수업하는 것이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던 이유는, 사실 그 시작은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 교사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나 독재에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교사들의 족쇄가 되어서 학교 밖에서 조차,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를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직에 취임함으로써 교직 임무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 교원은 연공 가산과 연금 혜택을 위하여 교직에 그 적을 보유하고 공직의 임기종료 시에는 전직 또는 그와 동등한 직위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수많은 회원국들이 다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 제도가 정치적 선진국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유네스코의 그런 권고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승아 위원** 일단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오늘 이 법안은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정말 가감 없이 본인의 의견들을 많이 밝히시고 또 부처도 무조건 이것은 그냥 법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큰 틀에서의 논의를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각각의 조문을 일일이 뜯어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그리고 김민전 위원님 드릴게요.

○**강경숙 위원** 백승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의 수학권 침해와 참정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권이 침해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조정 가능한 행정적 대책이 있어요. 사실 출산휴가, 병가, 파견, 연수휴직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한 사유로 휴직을 허용하거든요. 장기 휴직도 줍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 사안 한번 따져 묻고 싶고요. 수학권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행정적 대책으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아까 백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긴 한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말씀하신 거가 있어요, 여기 내용 중의 교육부 지적에. 그러면 교원은요 사실 특수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직접 연결되어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민주적인 것 그다음에 현장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만 교육 정책이 굉장히 풀뿌리로 제대로 다 형성되거나 집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적한 것 중에 보시면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공정에 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엄정한 선거법 집행이라든지 선관위의 감시라든지 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될 그런 사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백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긴 한데 유네스코 얘기하셨지만 사실 OECD 교육지표에서도 한국이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이 가장 낮은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K-민주주의 이런 것을 다, 우리나라를 뉴노멀로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야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도상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개인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인데 국정과제에서도 이것을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으로서의, 그러니까 교사니까 교사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정작 의원들 법안에 대해서 죄다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교육부, 국정과제에서 이야 기하는 정치 기본권 확대는 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입법 취지,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동안과는 너무나 다른 제도가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서 열리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하나에 일단은 어떤 반대 의견이 있는지를 우선은 열거를 한 거고요.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단순히 저희 교육부의 의견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보다 크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것만 가지고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다 끝나셨나요?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사실 백승아 위원님께서 유네스코 얘기하셨는데요. 독일 기본법에서는 모든 직장인이 출마를 이유로 해직당해서는 안 되고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도 복귀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다 마찬가지로 출마한다고 해서 해직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공무원에게만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상위 공무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론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더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국의 교육자치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것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수준, 기초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은 점점 들어가는, 재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이게 또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교육자치가 과연 성공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를 마친 교육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산에서부터 해서 각 지역마다 교육감선거가 또 있어야 되고 중간에 임기를 못 마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또 광역단체장후보로 나온 후보들보다 교육감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선거의 트레이닝이 안 돼 있던 분이 갑자기 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참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주가 13개 주이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은 선거로 안 뽑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 자체가 지금 재평가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선생님들까지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다면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봇물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옳은 것과 실제 작동해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또 교사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면 다른 분야도 다 인정해야지 왜 교사만 하느냐, 왜 일반 직장인은 삼성 다니다가 출마했다고 삼성에 못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다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육감 선거라는 이런 공직 선거 출마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한 데, 두 번째 거는 일단 빼고요.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든 교총의 생각이든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표정이 다 밝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반갑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 제도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정성국, 백승아는 안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시고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교육 경력, 교육 행정 경력이 없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그러면 이 규정을 뒀을까요? 왜 교육감 출마자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반드시 3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냐고 하겠습니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정치인이 교육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교육감 선거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이 출마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마를 못 해요. 왜, 사표를 내야 되니까. 지금 현직 교원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출마해서 어찌 보면 자기 밥줄이 끊기는데 연금 같은 것도 다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퇴직 교원만, 지금 교육감 선거 나오는 분들은 거의 100% 퇴직 교원이에요. 62세, 퇴직한 사람들만 출마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직 교원 중에 이분은 자기도 의지가 있고 주변에서도 충분히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평가하는 분이 하고 싶어도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대학교수는 왜 사표 내지 않고 휴직을 허용해 주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

아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로 연구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대학 교수하고 초중등 교원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겠지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의 정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학생은 머리가 다 켰기 때문에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거권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활동이 아니에요. 국민의 정치 참정권 보장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단지 교원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와의 차별성 부분은 늘 주장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국교총도 비슷합니다. 최대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총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충돌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 선거가 가지는 특성, 교육감 선거가 주는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논의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먼저 차관님께 몇 가지만 여쭐 텐데 서울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님이 어디 출신이시지요? 서울대 교수님이시지요? 그다음에 임태희 교육감님은 뭐 하셨지요, 교육 관련?

○**백승아 위원** 한경대 총장.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두 분 다 교수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초중등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초중등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정책의 전반을 다 살펴봐야 되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자리가 고등교육 기관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대체로 옵니다, 이유는 아까 쭉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직 교사들이 출마를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감의 자리가 고등교육, 즉 대학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중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 두 분이야 뭐 잘하시지만 대체로 대학의 교수 출신들은 초중등에서 무엇을 지금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자녀를 낳았어도 오랜, 이미 다 키워서 옛날에 키웠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현재 지금 따끈따끈하게 아이들이 무슨 정책을 안 맞아 하는지 무슨 정책이 새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그러니까 교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감 선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 가치가 잘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반성도 좀 들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교육감 선출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쭉 봤더니요 1949년부터 90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임명제였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교원 선출 방식으로 임명을 했었고요. 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혹은 줄 세우기, 낙하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 98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선거인단에 여러 가지 로비들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끔 직선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맞춤한 사람들이, 즉 적합한 정책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 왔던 분들이 교육감으로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하니까 교육감 출마 자체를,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교육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짹 없애 버리고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자리에 그 영역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가 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열어주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그게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렇게 각자 의견을 일단은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록에 남기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국회다운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굉장히 저도 안 쓰던 머리를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이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셨는데 교사들에게만 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 기본권이 뭔가 저도 구체적으로 봐야겠다 싶었더니 참정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이 중에 교사에게 없는 건 피선거권. 없다 기보다 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다음에 청원권, 있지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거 다 있으시지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이게 없으시지요. 지금도 정치 기본권의 완전 박탈은 아닌 거지요. 일부 제한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저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할 때는 우리 헌법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안전,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복리냐 이 논쟁으로 내려오는 거겠지요. 교사의 직책이 특별한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의사가 그분들 업의 본질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또는 걱정 또는 일부 사실, 이로 인한 사회적 공론장 담론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해 주세요’ 했더니 수십 건의 내용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누구 찍으랬어요’, ‘누구 나쁜 사람이래요’라는 내용입니다. 일부는 쓰면 안 되는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해서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실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면 워낙 나이 차도 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연애사부터 시작해서 술술술 했던 기억들도 있고 정치적 입장도 얘기했던 것 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지 보면 저는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떠나서 교육감의 업무 내용이 초등·중등 교육인데 왜 고등교육 전문가가 대부분 되느냐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저는 그 대안은 실은 교육감 출마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다섯 키워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한 학부모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습니까? 누구보다 할 말 많을 걸요. 교수가 초중등 교육 경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학부모는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국민이, 지역으로 치면 서울이면 서울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일반 선거에서 출마자 제약이 걸려 있는 유일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특정,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는 변호사들만 하지요.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만 합니다.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모든 유권자가 하는 선거에서 출마자 제외하는 조건을 거는 유일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인데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이거에 대한 법안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법안으로 내려 가면 휴직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출마 못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지 않고 사직을 하기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갖고 선거에 출마하시는 건데 특정 직책, 직군만 그 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참정권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원 하나에만 볼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연속성에 중대한 피해를 얻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정당법·공직선거법과 큰 틀에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저도 굉장히 많은 교원단체들에서 요구를 하셔서 웃으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 보냈는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이시거든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참정권을 함께 늘려 나가는 건 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직군 중에 교원만 더 많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담론의 근거가 뭘까요? 그분들이 활동성이 더 강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 전체가 아니면 교원이 국가공무원이기를 포기하겠다, 다른 여러 나라처럼. 그러면 저는 즉시 참정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실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엄격히 제한해야겠지만.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나만 예외적으로 우리 군만 예외적으로 정치적 참여 참정권을 다른 직군에 비해서 더 가져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이 또한 비교사 국가공무원 직군들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왜일까라는 거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단은 제한하는 것이 위

험부담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소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교사분들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 국가공무원을 포기하시든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면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적 지향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들에게 정치적 기본권, 특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저는 반대로 학부모들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혹시 정당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정당에 가입했는지 제가 알아야 될, 학부모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은 우리 법안소위를 넘어서 국가적 공감대, 고민정 위원장님도 그리고 민주당도 국교위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주제야말로 공론화를 한번 부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으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의 주장으로 넘길 문제는 아니고 국가가 과연 수백만 명의 국가공무원들의 정치 참정권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교사 직군부터 시작한다면, 그 또한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정말 큰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학생들, 학부모들, 일반 국민들이 교사의 정치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한 여러 번의 논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뜻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사실 이 법안을 오늘 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이 국회 안에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진 첫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조정훈 위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은 국가공무원도 정치기본권 보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 공무원, 하위 공무원 차이가 있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 막는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의원실로 다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어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왜 교육 공무원만 주냐? 그것은 저희가 교육위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교사 정치기본법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안위에 가면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권도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어질 것이고요. 교사 단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임위 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정당 가입 알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 어느 정당인지 내가 알고 싶다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교사들이 안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우리 선생님 쉽으니까 나 더불어민주당 쉽어’ 내지는 ‘우리 선생

님이 국힘당이니까'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이것은 학교 밖의 개인의 인권 문제기 때문에, 시민권의 문제기 때문에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주장합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교사, 정당 가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후원금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저는 제 법안에 학생 개인에게 수업 시간에 교사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는 쳐별 조항을 아예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교사가 자기 종교를 밝힐 의무가 없듯이 정당 가입 여부도 밝힐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불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부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듯이 정치적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된다, 정당 가입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학생들의 어떤 판단력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시간 안에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피력하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독일에서 수업시간에 어떤 한쪽 의견을 교사가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에서도 교사가 다 출마하고 시의원을 하고 도의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독일 의원과 얘기했을 때 한 말은 '한국은 의원이 되면 교사를 그만둬야 되냐, 나는 그러면 애초에 교사를 안 했을 거야. 되게 놀라운 나라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교사라는 이유로 이런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1등 시민 2등 시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도……

○**소위원장 고민정** 김문수 위원님, 짧게.

○**김문수 위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1870년도에 흑인한테 투표권을 주니까 '어떻게 흑인한테 투표권을 줘, 못 배운 사람들한테. 큰일 나', 난리를 했는데 투표권 주니까 큰일 나지 않았고.

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하니까 '아니, 어떻게 여성들한테. 큰일 나요. 나라 망해', 나라 망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걸…… 큰일 나',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고 잘 굴러 가고 있고 학교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은 절대 배우자든 뭐든 아예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인데 아내가 공무원인데 선거운동, 피켓 들고 열심히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공무원들 난리나고 큰일 난다고, 정치 물든다. 그런데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기본권은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리게 하는 국가일수록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우리나라 후진국입니다’ 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빨리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래도 아직 국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니 수업 중에라든가 이럴 때는 절대 정치적인 것 하지 않고 수업 끝나고 한다든가 또 주말에 한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 가면서 이제는 교원 공무원들에게도 정치기본권을 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아까 말씀 안 하셨던가요?

○**강경숙 위원** 저 하긴 했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짧게만, 왜냐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강경숙 위원** 많이 공감이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도 지금 정당 가입하고 요 교육감선거 다 합니다, 16세로 내렸는데.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지금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도 사실 반대했었을까요? 제가 이 주제 가지고 기자회견 많이 했는데 부모님들이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학부모단체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궤를 같이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리고 아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조정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개헌 논의에서도 이전에 그게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가 교육위니까 교육위를 다루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도 필요하겠지요. 그건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런 것인데요.

여하튼 저는 차제에, 이렇게 논의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주제가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저는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좀 진지하게 우리가 책무성을 가지면서 이 논의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있었지만요, 이걸 긍정적으로 같이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우리가 개헌을 논의해야 될, 무르익은 시점이 왔다는 말씀들을 여야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요. 이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무르익은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의 갑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 안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향후에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른 상위위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현장 의견들을 많이 청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교육위가 새로운 새벽을 여는 상임위가 되면 아마 행안위며 뭐며 다른 곳들도 따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함께 있어서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에 해당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대상이 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입학사정관 관련해서 현행법 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34조의2 3항과 4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항에서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한 학생과 사촌 이내 친족인 경우에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항에서는 일명 사제 관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시에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 현황을 보시면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이 있는데 위촉사정관이 내외부의 교직원을 위촉하는 경우입니다. 내부 교직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외부 공공사정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약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어서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은 회피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학사정관이 사제관계 등에 있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회피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피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처벌 수위가 책임과 벌칙이 비례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행법상 대학입시 관련해서 사유별 벌칙을 보시면 5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1년 1000만 원 경우는 입학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학 허가한 경우, 수능 출제위원이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회피신고의무가 준용되는 외부위원도 별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입니다.

34조의2제4항 괄호 안 부분에서 3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서 명확히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 6페이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일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특이사항은 없고 경과조치 관련 사항은 개정 조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34조의2로 되어 있는 부분을 34조의2제5항, 64조제1항을 64조제1항제2호, 개정 규정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의 내용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별칙 조항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은 어떤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 그대로 5년 5000만 원으로……

○**소위원장 고민정** 동의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아까 교사 정치 관련된 내용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들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수 입학사정관을 계속 해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친인척 중에 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숨기고 만약에 입학사정관을 했다 그럴 경우에 발각이 되면 징계를 학교에서 내려 줍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사실 이렇게 지금 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징계 때문에 혹은 징계가 약하다고 해서 교수들이 몰래 하는 경우들은 제가 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지금 정성국 위원님 이 법안 발의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신 법안이고요.

다만 차관님께서도 이 별칙 조항에 대해서 동의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셉니다. 이것보다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약간 과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좀 세기 때문에 조금 좀 낮춰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다 동의는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이 제도,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이 개정안의 별칙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학생들 봤을 때 이 입시의 공정성 부분보다 중요…… 너무 중요하지요. 정말 지금 가면 갈수록 입시가 치열하고 입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자녀 한 명에게 매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염중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좀 세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 법이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는 궁금증은 이것을 어떻게 알까? 이게 지금 이게 밝혀졌을 때의 책임과 벌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끝내면 누가 고발하거나 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데 법이 굉장히 꼼꼼하셨다고 한 게 친척인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폐면 나올 것 같은데 내용에 보니까 학원·과외 교습, 학교 교육을 한 경우까지도 배제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김준혁 위원** 방법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김준혁 위원** 방법은 없어요.

○**조정훈 위원** 방법이 없지요?

○**김민전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정성국 위원** 이렇게 또 제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훈 위원** 제보?

○**김준혁 위원** 제보지요, 제보.

○**정성국 위원** 제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김민전 위원** 이게 주로 미술·음악 이런…….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통과시키고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법안을 한번 제가 고민해 봐야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5000만 원, 5년 이하 징역 낮추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그것을 저지른 학교와 담당자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센 벌입니다. 그 학교와 그 입학사정관이 이런 이해관계충돌에 있었는데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 한 줄만 공개돼도, 감히…… 그것 하나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그 내용을 지금…….

○**조정훈 위원** 그럴까요?

○**김준혁 위원** 그것 추가로 개정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성국 위원**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소위원장 고민정** 나중에 추가 입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정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법안을 개정할 때…….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4쪽을 보십시오. 이게 5년에 5000만 원이면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거든요. 이거랑 같은 수위로 처벌을 하신 거라서 이게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 유출을 하는 거랑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물론 밝혀지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속여 가거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더 세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냥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를테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입학사정관 자격이 라든지 취업 등 자격을 박탈하는 것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실은 시험 문제 유출만큼 나쁜 게 뭔가 짐짓하니까 안 밝힌 겁니다. 입학사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회피를 했었어야지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다, 내가……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회피 안 했다는 것은 뭐랄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특혜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닌 건데 이것은 굉장히 질이 양질이 아니고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게 단순 과실이면 모를까 충분히 입학사정관이 되면서 숙지되는 내용일 텐데 이것을 안 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받고 그다음에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진짜 악한 마음먹으면 갈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차관님한테 관련해서 하나만……

아, 답변하실 게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소위원장 고민정 먼저 말씀, 답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자격 박탈하는 그것은 현재 있습니다, 법안에.

○조정훈 위원 아, 여기……

○정성국 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이미 시행은 하고 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거기에 벌칙을 더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것은 거의 수사 결과 밝혀지는 사례들일 거고요. 최근에 음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벌칙을 좀 세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5년·5000만 원, 1년·1000만 원밖에 없지만 이 사례를 1년 1000만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약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중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교습을 받은 경우이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인데 이게 의도치 않게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가족관계라는 게 다 명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겠지만.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것을 학습받았느냐의 여부인데 그것을 교사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고의로 그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우려는 없나요?

○김민전 위원 사실 교수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자기의 친인척이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아예 신고를 먼저 하도록 해서 입학사정관이 못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자기의 제자나 이런 것은 그럼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우리 제자가 올 거다 이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럼 보면 내가 가르친 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 채점할 수 없

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방금 제가 설명 들은 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거니까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지 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다른 분들 더 질의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강경숙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실장을 했었는데요. 외부에서 지금 위원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적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위원일 경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과외 교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미리 알고 올 수 있겠지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은 본인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실장이라든지 교내 입학사정관 실장이 외부에서 누구를 위촉해 온다고 하는 경우예요, 보통.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와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논리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 내가 친척인데 내 조카가 여기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없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아까 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게 좀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요 설명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벌칙규정에 대한 적용은 현재 있는 사정관에 대해서 외부 위원까지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처벌이 되는 경우는, 5페이지 박스 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경우를 지금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보완 설명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대체로 이 법안은 의미에 대해서도 목적에 대해서도 다들 동의를 하시고 벌칙규정만 5년은 너무 과하다, 그런데 1년은 또 약하다.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

○**정성국 위원** 저도 지금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감되기 때문에 이게 3년·3000만 원이라든지 2년·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3년·3000만 원으로 다들 동의하십니까?

○**정성국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 정도는? 엄중함도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말할까 말까 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법안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3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을 행한 사람이면 무조건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첫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고,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끝 아닙니까, 이것?

○**김준혁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논쟁의 소지가 되는 거고 법안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조정훈 위원 차라리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것을 빼면 어떻습니까?

○정성국 위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준혁 위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훈 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김준혁 위원 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정황이 충분히 나와지는 거지요.

○박성준 위원 수사해서 밝히는 거지요.

○강경숙 위원 수사해야지요.

○조정훈 위원 수사해서?

○박성준 위원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또 조정훈 위원님 주도하셔서 또 새롭게 개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3000만 원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을 지금 하단 박스에 보시면 현재는 그 면책 대상을 학교장·교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포함하고 면책 적용 기준을 현재는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지금 교육부에서 고시를 마련해서 7월 4일부터 제정해서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간단한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시행일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이 경우도 원안 통과입니까, 수정 통과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 통과입니다. 시행일이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아이고, 아깝다. 원안 통과……

○김문수 위원 날짜가 지나버렸잖아요, 늦어 가지고.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네, 원안 통과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고민정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내대학원 관련 사항인데요.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한 유형으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대상에 종업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까지 그 자격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서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의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사내대학원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서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서 특례 형식으로 그 근거를 두었는데 이 해당 조항이 27년 1월 16일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사내대학원 설치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서 석사 과정을 설치하는 LG AI대학원이 개교 예정인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 자격을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해서 채용 시부터 전문교육을 하려는 취지고요.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보면 현재는 채용후보자가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사내대학원만 가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사내대학도 가능하게 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이미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두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부칙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시행일 관련해서 사내대학원 규정의 일몰시기에 맞춰서 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사항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 법상의 근거규정을 삭제했는데 이 법에서 시행일을 미루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사항은 종전에 있던 사내대학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제3조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과조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종전의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그 문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안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LG에서 AI 특별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이 신설이 됐는데 그것이 이 법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사내대학원을 이 법안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 사내대학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령 수도권과 지방이라든가 이런 차별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가령 수도권 안에는 지금 대학들이 실제로 더 신설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 수도권에 대학 규제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내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도 자체가 붕괴되거나 그런 것하고 연동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차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번에 설립되는 LG AI대학원 말고 기존에 학부 과정에서 하는 대학이 4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규제는 학부에만 있고 대학원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내대학은 대체로 학생 수가 40명, 60명, 이 정도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사람 수가 얼마 안 돼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사실 LG AI대학원 30명 정원 이것을 보면서 참 급한 법안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도 챙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도권과 지방 문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주는, 확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어떤 차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 산업부에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는 첨단학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 평생교육법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러면 첨단학과가 아닌 일반학과까지 다 개설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내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회사에서 모든 자원을 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의 수급이 아주 긴급한 첨단 분야나 이런 데를 빼고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립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설립하는 학과의 내용을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성준 위원 저도 들어보면서 좀 의문 나는 게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AI대학원을 LG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SK가 반도체대학원을 만든다는가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관련 대학원을 만든다는가 그렇게 되면 산학연으로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당한 것 같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확대될 가능성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대학교육에 관련된 일반 대학원들하고 충돌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에서 하는 AI 사내대학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학원이 확장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 기준에 있는 대학들은 축소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향후에 LG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하는 사내대학원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조사 같은 게 되어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정책적으로는 대학원 제도도 있지만 계약학과 제도가 있어서요. SK도 계약학과가 있고 삼성도 계약학과가 있고 이렇게 계약학과를 더 권장하는 정책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노력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내대학은 수요가 있어서 만들기는 하지만 좀 예외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위원 계약학과라는 게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대해서 한다는 그런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4년 과정 이수해서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계약학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 법안은 다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박성준 위원 한 템포 쉬었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좀 한번 보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급하게 통과해야 돼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 결과들을 차관님께서 저희 교육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 판단해서 다음 첫 번째 법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시는 데 어떤 이유로 연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의결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실은 비록 저희 당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김준혁·박성준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조항이 2027년 1월 16일이면 이게 통과되면 약 1년 몇 개월 쓰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시간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 포인트 원 기업 법이에요, 이것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몇 개의 사내대학원을 예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더 만들겠다고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 제도 안으로……

○**조정훈 위원** 지금 현재 사내대학이 4개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학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석박사를 지금 열어 주는 건데 그러면 11월에 통과되니까 1년 2개월……

○**김준혁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은 기존에 있었던 인재 육성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으로 집어넣자는 것이거든요, 제 법 취지 자체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통과되어도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고.

실제로다가 현재 R&D와 관련해서 인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나라 AI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대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급하면 고육지책으로 LG가 AI대학원을 사내에 만들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들 생각들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봤는데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 시행이네요?

○**김준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위원** 뭘 이렇게 일찍 하려고, 이렇게 늦은 시행기일이 있습니까, 법안에?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현재 있는 법의 일몰에 맞춰서 옮기는 것으로……

○**김준혁 위원** 지금 법안 갖고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안정되게 하자는 거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1년 3개월을 이렇게……

○**김준혁 위원** 지금 법안으로도 다른 대학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한 템포 쉬어 갔다가 가는 것으로, 아직 일몰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정훈 위원** 행간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준혁 위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경우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

감한테 통보하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이런저런 교육환경이 바뀌는 데 대해서 교육감이 제때 대응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타당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7조의2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의 조항 내부에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되는 용어가 없어 가지고 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조 1항의 후단에, 지금 7조 1항에서는 승인받은 이후에 평가서에 반영된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 결과를 이행하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통보하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안이, 지금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 겁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환경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 교육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경되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훈 위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라는 게 개발업자들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하거나 그거를 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환경평가를 한 다음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고 승인이 날 수도 있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강경숙 위원** 학생 수 증가.

○**조정훈 위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거를 이 사업시행자가……

○**소위원장 고민정**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호수 변경이 더, 예를 들면 총수를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도 더 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교육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그것과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큰 계획 변동이 없고 그런 내용이 좀 추가될 때 사실은 다시 재평가를 처음부터 받아야 되지만, 되면 또 좋겠지만 그건 사실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다 보니 이런 절차를 둬서 교육감님이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진선미 의원님이 왜 이거를 발의하셨는지 짐작을 해 보고, 이거는 실은 저희 지역에도 영향이 있는 법안인데 저는 이거야말로 조금 더 개정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통보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금 동·호수 등등 층을 변경해서 학생 수의

상당한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면 이거는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자기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과밀이 되잖아요. 이게 학교를 더 짓든지 하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감 등등의 입장을 듣든지, 안 그러면 변경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저희 마포같이 학생이 30명, 35명 막 이래요. 이게 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초래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통보도 안 했는데 통보한 거는 한 단계 나아진 거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입주 시작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김준혁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아마 이 법안의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법의 가장 주체는 학교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중대한’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의 증축이라든가 혹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자체에서 그렇게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자체에서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일부 변경은 되지만 그 일부 변경된 것 때문에 환경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환경평가 하는 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는 빨리 신설을 하거나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보다 훨씬 먼 거리에 다니는 불편을 몇 년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가장 짧은 순간에 단축해서 그 부분만 다시 평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훈 위원님께서는 이게 업체를 갖다가 용인해 주기 위한 것으로 혹시라도……

○**조정훈 위원**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김준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은 오히려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차관님 답변 주실 거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특별히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특별히 없으세요?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김준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정안으로만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 학생이 증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랄까 부분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실은 이 내용은 통보하는 걸로 끝납니다. 통보하고 수정된 사업계획……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그 밑의 네모박스 보면 평가서를……

○**조정훈 위원** 밑의 몇 페이지……

○**소위원장 고민정** 3페이지, 네모 2개가 있잖아요, 왼쪽에.

○**조정훈 위원** 네모가 아니라 지금 조문대비표를 봐야 되는데……

○**소위원장 고민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거는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정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뭔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 통보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원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교육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열어 주는 거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문대비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사후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소위원장 고민정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거는 다른 조항에……

○조정훈 위원 지금 조문대비표에 없잖아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 조항은 이미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다른 법에 이미 있다, 그 부분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사후평가는 언제 받는 겁니까, 입주 후에?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교육감이 이 평가서를 한번 받고 다시 사후평가서를 재제출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언제, 재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발생합니까? 사후라는 게 언제 사후입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평가서를 접수받아서 심사를 하고 승인한 이후에도, 그전에는 이게 변경되면 또 사후평가를 한번 더 받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 통보가 없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통보를 하나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오히려 조정훈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네요.

○김준혁 위원 더 강화하려고 한 거네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소위원장 고민정 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위반할 경우에는 별 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나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조정훈 위원 그거 안 하면 구청장이 준공 안 해 주면 돼요.

○김준혁 위원 실제 준공을 안 해 주지.

○소위원장 고민정 맞아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사실 최종 승인 나기 전까지 승인이 안 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아예 진행이 안 된다?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그 통보 자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 통보를 안 하면 승인이 안 나고 공사 시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백승아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제 마지막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제가 마지막을 좀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의 즉시라는 게 며칠 안이지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기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늘 며칠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즉시라는 게 며칠입니까? 이게 며칠 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는 즉시 통보했다는데 교육감은 즉시 통보를 안 했다고 할 때 이 즉시의 기준이 뭐지요?

말씀 주세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특별히 공식적인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승인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즉시라는 기준을 며칠로 잡느냐에 따라서 분쟁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조정훈 위원** 정 위원님이 즉시를 한번 정의해 보시지요.

○**정성국 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즉시가 며칠입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보통 한 삼사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조항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즉시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3일,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된 걸로 봤는데……

○**정성국 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 주세요, 즉시가 며칠을 말하는지.

○**조정훈 위원** 심각하네, 중요한 문제네.

○**정성국 위원** 이게 크지, 굉장히 중요하지.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안에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이 책에도 보면, 법률용어집에도 보면 ‘지체 없이’보다는 ‘즉시’가 더 빠른 시간이다라고 규정만 되어 있지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즉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은 것 같고 그게 며칠인가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윤상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일 정도로……

○**소위원장 고민정** 제 기억에도 한 3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통상적으로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통상적으로.

○**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의무조항인데요 사업시행자가 모르면……

○**정성국 위원** 이거는 즉시라기보다 좀 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즉시라고 통과시키면 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거 날짜 기한을 둘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우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정성국 위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괜찮은지, 사업시행자하고 교육감 사이에 이게 만약에 잘못 이야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만약에 30일로 하면 오히려 더 자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간소화하고 이런 절차를 좀 만들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저희도 교육환경 보호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민생경제와 관련돼서 요즘 주택공급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찾아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기한을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서로에게,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일단 이거를 ‘즉시’라고 원안대로 가고요. 제가 계엄법도 찾아보니까 계엄법 11조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체 없이’가 며칠인가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없이’, ‘즉시’ 이거는 모든 법조항에 다 해당되는 거여서 우리 법안에 며칠이라고 딱 못박기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서요 일단 이거는 그냥 원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준혁 위원** 합리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CCTV 설치법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학교 내의 출입문 그다음에 복도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런데 교실이 들어갈 것에 대한, 왜냐하면 ‘등’ 자가 있기 때문에, 교실이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조문에 어떻게 담을지 수석전문위원하고도 계속 상의를 했는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딱 떨어지는 법조문이 나오지 못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여야 위원이 모두 다 동의했다 하는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법조문에 녹여낼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법안에 대해서 다음 법안소위에 상정을 해 주시고……

○**소위원장 고민정** 상정은 해야겠지요.

○**조정훈 위원** 그리고 논의도 그걸로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다 이 맴버들로 들어오실 거니까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이어 가도록 하지요.

○**조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제센터, 관제 뭐였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관계 시스템.

○조정훈 위원 관계 시스템을 지자체에 둘지 말지 동의가 안 되면 저는 그거는 빼고라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교실이 들어가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동의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교실을 빼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900개라 그랬나요? 그 교실에 있는 CCTV를 빼는 건 오히려 더, 특수학교 장애학생들 필요가 있어서 달았을 테니까 그거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특수교실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뺄 건지, 하지만 나머지 교실에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지금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번 회의 때 정리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교육자치안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